



제 43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30호)

202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황 충 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살처분 보상금 감액의 경감 적용 시 최종 지급기준 상향 조정 ..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11.

3. 회 부 일 : 2025. 11.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방역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가축전염병 조기 신고자 등에게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방역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한 농가가 오히려 감액의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참여를 유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후단 수정).

Ⅲ. 검토의견

1. 살처분 보상금 감액의 경감 적용 시 최종 지급기준 상향 조정

개정안은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에 대해 경감 적용을 하더라도 최종 지급액을 가축평가액의 80%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상한 규정을 완화하여, 그 상한을 90%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48조(보상금 등) ① ~ ③ (생략)	제48조(보상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u>100분의 80</u> 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 ----- ----- ----- ----- ----- ----- <u>100분의 90</u> -----.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사육제한명령 위반, 가축전염병 감염의심 가축 미신고, 예방접종 미이행, 방역기준 위반, 가축 전염병의 재발생 등 농가의 과실

또는 방역 실패가 인정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의 5%에서 100%까지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참고자료2 감액기준)

반면, 질병관리등급 우수 농가, 가축전염병의 조기신고 농가, 무항생제 인증농가 및 방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 1등급, 구제역 등 가축전염의 최초신고, 무항생제 인증 등의 농가는 5%에서 10%까지 감액에 대해 경감률을 적용하고 있음.(참고자료2 감액의 경감기준)

다만, 현행 제48조제4항 후단은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평가액의 80%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액 경감 요건을 충족한 농가라 하더라도 최종 지급액은 가축평가액의 80%까지만 지급 받게 되는 상황임.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 상한액이 가축평가액의 80%로 제한됨에 따라 농가로부터 방역기준 준수 및 조기 신고 등을 유도하려는 동 제도

1) 제48조(보상금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제6항, 제6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6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 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
4.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제3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이 2회 이상 발생한 가축의 소유자등
5.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등록·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한 가축의 소유자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최종 지급 가능한 보상금 상한을 80%에서 90%로 상향하여, 방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조기 신고를 준수한 농가에 대해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도 방역 기준을 준수한 농가가 상한 규정으로 인해 감액 경감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방역 참여 의지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 지급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90%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5

참고 1 **살처분 보상금 사업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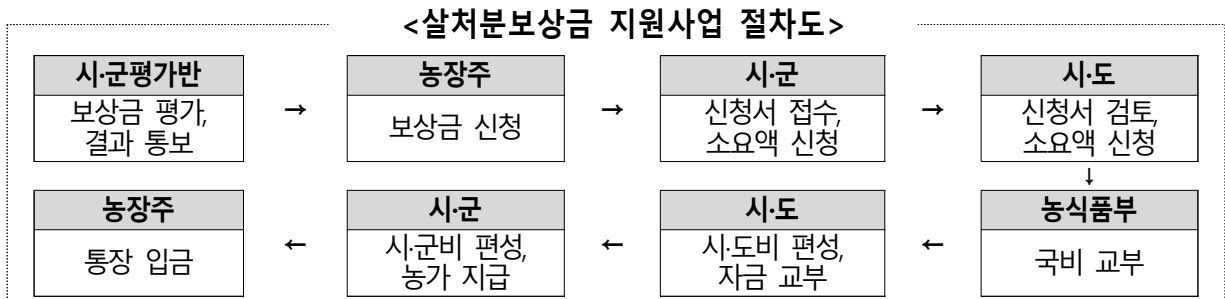
□ **(사업목적)**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지급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지급기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식품부 고시)

□ **(지원기준)** 시·군·구 보상금평가반*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보상금 액수 결정(보상금 등 지급요령 적용)

* 평가반 : 반장(시군구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시군 방역계장, 축협, 동물위생시험소, 공수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 등 5명 이내



□ **(‘25년 사업비)** 802억원(국비기준)

○ (지원비율) ①살처분보상금(국비 80%, 지방비 20%), ②기립불능우 폐기 보상금(국비 100), ③ASF폐업보상금(국비 70, 지방비 30)

* 연도별 집행액 : (‘20) 641→ (‘21)1,953→ (‘22) 744→ (‘23) 1,201→ (‘24) 666억원

□ **(지급기준)** 살처분 당일 시세* 기준. AI, 구제역, ASF의 경우 살처분한 날 전월 평균시세 적용

* 한우, 젓소, 육우, 육성돈, 육계, 육용오리 등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 시세적용. 다만, 돼지 모돈, 산란계, 종축 등 시세가 없는 가축은 생산비와 잔존가치를 평가하여 지급

○ 다만,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 동월 평균시세와 비교하여 $\pm 15\%$ 초과·과시에는 살처분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시세를 적용

* AI,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축산물의 가격변동에 따른 보상금의 과잉·과소 지급방지를 위해, 지급기준을 살처분 당일 시세에서 살처분한 날 전월시세로 변경(24.11)

- (감액) 양성농장 20% 감액, 방역 규정(소독 등) 위반시 5~80% 감액

- (경감) 시군별 최초 신고 농장, 조기신고, 무항생제 농장 등 10% 경감

참고 2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감액경감 기준

□ 지급기준

지급기준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시	기본 100% 지급
	감액, 경감 적용 후 최종금액	최소 20% ~ 최대 80% 지급

□ 감액기준(법 제48조제3항 관련)

구분	관련규정	위반사항	감액 비율
사육 제한	법 제3조의4 제5항	사육제한 명령 위반	100%
질병 발생	-	구제역·럼피스킨·HPAI·ASF·돼지열병·브루셀라병(소)·뉴캐슬병 발생시 (구제역 발생농장의 미감염 살처분 가축은 미감액 가능)	20%
	-	결핵(사슴) 발생시	40%
	법 제23조제1항, 제3항	가축전염병 발생농장 내 물건	20%
외국인 근로자	법 제5조 제3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미 실시	10%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	10%
축산 관계자 입국신고	법 제5조 제6항	축산관련 종사자가 입국 사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10%
축산 계열화 사업자의무사항	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경우	10%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10%
의심축 신고	법 제11조 제1항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1일째)	10%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2일째)	20%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3일째)	30%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4일이후)	40%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0%

구분	관련규정	위반사항	감액 비율
역학 조사	법 제13조 제6항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 진술 및 고의적 사실 누락·은폐	40%
예방 접종 검사 주사 투약 등	법 제15조 제1항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검사·면역표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방역 시설	법 제17조 제1항	소독설비·방역시설 미설치 (법 17조의6 제1항의 전실 미설치로 감액한 경우는 감액 제외)	20%
소독 및 방역활동	법 제17조 제2항	농장 소독 및 구충·구서 미 실시	5%
축산차량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법 제17조의3 제1항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
	법 제17조의3 제2항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시설출입차량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철새군집지역을 출입하면서 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20%
	법 제17조의3 제5항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0%
방역기준 준수	법 제17조의6 제1항	전실(닭, 오리, 돼지 한정)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
		일제 입식·출하 또는 휴지기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
		남은음식물을 돼지에 급여하여 ASF 발생한 경우	100%
		그 밖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각각 감액)	5%
명령 위반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격리·역류·이동제한·소독명령을 위반한 경우	20%
	법 제19조의2 제1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
살처분 명령	법 제20조 제1항	살처분 명령을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살처분을 지연한 경우	10%
		살처분 명령을 48시간 이상 72시간 미만 살처분을 지연한 경우	30%
		살처분 명령을 72시간 이상 살처분을 지연하거나 살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60%
오염물건 처리	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
재발생	시행령 제11조 제4항 (구제역, 렘피스킨,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이내에 2회 발생한 경우	20%

구분	관련규정	위반사항	감액 비율
	ASF, 돼지열병, 뉴캐슬병, HPAI, 소 브루셀라, 사슴 결핵병)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3회 발생한 경우	50%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4회 발생한 경우	80%
축산법	축산법 제22조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30%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초과두수 100% 그외 20%
역학 농장	-	항체가 검출된 경우	40%
		항원과 항체가 동시에 나온 경우	20%

□ 감액의 경감기준(법 제48조제4항 관련)

구분	관련규정	경감조건	경감 비율
질병 관리 등급	법 제18조	질병관리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10%
		질병관리등급이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5%
조기 신고	-	구제역·럼피스킨·HPAI·ASF·브루셀라병 최초신고(시·군·구)	10%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전염병의 발병 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에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10%
방역 노력	-	CCTV, 역학조사 결과 법 제17조의6의 방역기준 준수 등 방역 노력 인정 농가	10%
		가축전염병 발생한 연도 또는 그 전년도에 가축의 소유자 및 고용된 자 모두 방역교육 3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1년간 방역본부 전화예찰 응답률이 100%인 농가 중 방역본부가 우수 방역농가로 추천한 경우	10%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 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소·돼지 한정)	10%
		산란계 농장에서 최근 1년간 HPAI 미발생하고,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고시	10%
인증 취득	-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취득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HACCP 취득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 인증 취득	10%